

[별표 2] <개정 2011.3.1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1)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 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2)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이하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 4)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 5)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6)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7)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8)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조문	처 분 내 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 2항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 려고 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 2항제2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 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 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3)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 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 으려고 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 2항제3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 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 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4)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 주단체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	법 제24조제 2항제4호	

제한 경우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5)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라)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5호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시정명령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6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7)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7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